

회 의 록

회 의 명	2019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
일 시	2020.02.20.(목) 13:30~13:55
장 소	한세대학교 본관 8층 대회의실
참 석 자	○ 위원장 : 신현기(기획처장) ○ 위원 : 조용석(교수협의회장), 박범준(총학생회 회장), 이하영(부총학생회장), 김원희(대학원원우회장)
불 참 자	○ 황병삼(노동조합지부장), 김효건(공인회계사)
안 건	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 심사·의결
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	☐ 신현기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김원희 위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. [안건] 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 심사·의결 ○ 본 안건 심사·의결을 위하여 신현기 위원장이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을 설명함. ○ 김신용 기획평가팀장과 예산 담당 이주명 팀원이 이월금(잉여금) 개념, 교육부 처리 기준, 2020회계연도 본예산의 전기이월자금 반영 현황 등을 설명함. 그리고 이월금 처리 기준 및 원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, 현재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은 기준(안)을 제안한 것이고 논의를 거쳐 수정이 가능함을 설명함. ○ 이월금(잉여금)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함. ○ 박범준 위원은 현재 배정방안 중 “②학생만족도 결과 등에 따른 학생 요청 관련 사업 지원”과 “④강의 및 실습 기자재 관련 사업 지원”을 우선 순위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함. 이에 타 위원의 이견이 없어 해당 안을 반영하기로 함 ○ 이상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어 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을 의결하기로 함. ☐ 의장의 폐회선언과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 붙 임 : 1. 위원서명지 1부. 2. 회의자료 1부. 끝.

(앞장에서 이어짐)

2020.02.20.(목)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.

위원장 신형기 (서명)

위 원 조용석 (서명) 위 원 김원희 (서명)

위 원 박범준 (서명) 위 원 아하영 (서명)

위 원 _____ (서명) 위 원 _____ (서명)

끝.

2019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

- 일 시 : 2020.02.20.(목) 13:30~
- 장 소 : 본관 8층 대회의실
- 안 건 : 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 심사 · 의결



한세대학교
기획처 기획평가팀

【안전】 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 심사·의결

1. 이월금 관련 법령

-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0조(자금계산의 방법), 제21조(미사용이월자금)에 따라 당해연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 가능함
- 사립학교법 제32조의4(이월금)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·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
- 교육부 이월금 처리 기준 준수 필요

[사립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]

- ① 결산 시 사고·명시·기타이월의 구분 명확화
- ② 연도별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(자금계산서 기준)의 아래 규모 준수(「사립대학(법인) 기본재산 및 회계관리 안내」(‘17.1.17.)
 - ‘16년 1.7%이내, ‘17년 1.4%이내, ‘18년 이후 1.0%이내
 - ※ 적용대상 : 4년제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
 - ※ 기타이월금이 특별한 사유없이 과도하게 증가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요구
- ③ 외부회계감사 시, 이월금에 관한 사항 검토 철저
- ④ 잉여금 처리 원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준수

2. 잉여금 처리 원칙 수립 및 집행 참조

- 잉여금 개념 : '19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과 '20회계연도 본예산서에서의 전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의 차이
 - * 예시 : '19회계연도 결산 차기이월자금(100)-'20회계연도 본예산 전기이월자금(50)=50
- 잉여금 처리원칙 : '19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 집행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('20회계연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자금)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용방안 마련

- '1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'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

3. 이월구분(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)

구분	내용	사례
명시이월	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·세출예산에 명시하고,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	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금
사고이월	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.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	당년도 자금을 내년에 집행해야 하나, 검수 등이 끝나지 않아 “미지급금”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이월금
기타이월	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	

4. 이월금 처리 기준 및 원칙

- 이월금 처리 기준(안) 검토

구분	내용
기본원칙	교육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교육비로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
배정방안	① 한세비전 2023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② 학생만족도 결과 등에 따른 학생 요청 관련 사업 지원 ③ 특성화사업단 지원 ④ 강의 및 실습 기자재 관련 사업 지원 ⑤ 기타 학생 직접교육비 등 교육비환원 사업 지원 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 대응 사업 지원